

대구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가합2020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연

피고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일환

변론 종결2021. 4. 30.

판결 선고2021. 7. 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D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316,552,2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6,552,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4. 12. 10.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D가 E에 경북 울릉군 F 전 3,1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1) 지상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신축사업의 설계, 인허가, 시공사 및 분양대행사 선정 등의 용역업무를 맡기고, 용역의 대가로 객실분양 후 제반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금의 30% 상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갑 제2호증의 1)을 체결하였다.

나. E는 2014. 12. 26. 원고와 사이에, E가 2014. 12. 10.자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담당하게 된 용역업무 중 '분양대행업무(사전청약접수, 분양활동 및 계약유치업무, 분양대금 수납 지원업무 등)'를 원고에게 맡기고 그에 대한 대가로 분양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분양수수료를 지급(분양계약금 납입 후 중도금대출승인이 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입금 완료된 호실에 한하여 매월 15일, 30일 2회 수수료를 청구하고, 5일 이내에 현금으로 정산지급)하기로 하는 분양대행용역계약(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후 D, E, 주식회사 G(대표이사 D. 이하 'G'이라 한다)2) 은 2015. 3. 9. 위 2014. 12. 10.자 분양대행계약의 당사자를 종전 D와 E에서 G과 E로 변경하기로 합의(갑 제2호증의 1 제5면)하였다.

라. 원고의 분양수수료 청구 소송제기 등

1) 원고는 2017. 2. 10. D와 G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양수수료 총 347,550,101원(= 분양수수료 316,522,260원 + 이에 대한 소제기 시점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30,997,841원) 중에서 I에게 채권양도(2016. 7. 26.)한 18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2,550,101원(= 347,550,101원 -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5.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203274).

2) 또한 원고는 2017. 3. 3. D를 채무자로 하여 D의 J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청구금액 157,611,372원), 2017. 3. 13. 인용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단60427)이 내려져 그 결정정본이 2017. 3. 15. J 주식회사에 도달하였다.

마. 원고, D, G 등 사이의 합의와 이행 등

1) 원고, D, G 등은 앞서 본 원고의 분양수수료 청구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2017. 11. 30. G과 D는 원고의 분양수수료 청구내용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신설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합의(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이 사건 합의 당사자 중 K는 D의 남편이다).

원고(갑), 주식회사 G(을), D(병), K(정)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을, 병은 이 사건 호텔 분양용역 수수료 청구채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고, 가압류 청구금액 157,611,372원을 을, 병이 연대하여 갑에게 책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갑이 을, 병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203274호 사건에 대하여 을, 병은 갑이 주장하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2. 을, 병은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203274호 사건에서 수수료지급을 인정한다(인낙)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 후, 판결이 선고될 경우, 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후, 갑은 병을 채무자로 신청하여 인용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카단100100호 및 성남지원 2017카단60427호 가압류결정 사건에 대한 집행을 해제하기로 한다.

3. 을, 병은 갑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병이 시행사업을 수행할 법인(이하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제3자에게 위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신설법인은 병과 연대책임 하에, 2018. 5. 30.까지 갑의 가압류 청구 금액 157,611,372원에 준하는 분양형 호텔 객실 1채에 관하여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

2) 이후 D와 G은 2018. 3. 22. 이 사건 합의서 제1, 2항의 내용과 같이 원고가 D 및 G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수수료 청구사건에서 청구금액(= 162,550,101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5.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인낙하여 인낙조서가 작성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의 인낙조서'라고 한다).

3) 한편 2017. 12. 18.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가 신설법인으로 설립되었고, D는 2017. 12. 20. 피고 B에게 2017. 12. 19.자 매매(매매대금 20억 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2018. 5. 30.이 경과하도록 신설법인인 피고 B로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 기재된 분양형 호텔객실 1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 이 사건 토지의 전매

피고 B은 2019. 3. 18.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억 5,000만 원에 다시 매도하였고, 2019. 5. 22.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합의(갑 제8호증) 제3항에서는 'D 등은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D가 시행사업을 수행할 법인을 설립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설법인은 위 D와 연대책임 하에 2018. 5. 30.까지 원고에게 원고의 가압류 청구금액 157,611,372원에 준하는 분양형 호텔 객실 1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2018. 3. 22. 관련 사건의 인낙조서를 작성하여 이후 얼마든지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호텔 객실 1채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2018. 5. 30.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지난 후인 2020. 3. 4.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정들을 인식하고도 1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정만으로 원고가 곧바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의 사해행위에 관한 주된 주장 중 하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D에 의해 신설된 법인으로 이전되어 호텔사업이 지속되는 줄로만 알았고, 위 합의에서 제공받기로 한 호텔 객실 1채도 호텔 신축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이를 기다렸던 것인데, 실제로는 D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여 그가 설립하지도 않고 며느리가 대표면서 실체도 없는 제3자인 피고 B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면탈 등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일관되게 2019. 8. 초순경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여러 사정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③ 그런데 실제로 원고는 2019. 8.경 이후 D와 K를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K에 대해서는 2020. 12. 18. 사기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고단1617).

3)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분양대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E이지만, D에 대해 원고 주장의 용역대금채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E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인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분양업무 등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

분양수수료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합한 총 347,550,101원(= 분양수수료 316,522,260원 + 지연이자 30,997,841원)의 용역대금채권을 E에 대해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D는 2015. 4. 13. 원고에게 위 분양수수료를 직접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고(갑 제12호증), 또한 원고가 D 등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수수료 청구 사건에서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하기도 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D에 대해 앞서 본 전체 용역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원고는 그중 185,000,000원의 채권을 I에게 양도하였으나 D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고 2020. 2.경 I으로부터 위 채권양도의 철회통지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결국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원고 주장의 347,550,101원이 된다.

2) 피고들 원고에 대한 원고 주장의 용역대금 전부에 대한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분양대행계약의 당사자인 E 내지 G이다. D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 대해 157,611,372원의 약정금 채무만을 부담할 뿐이다. 원고가 이를 초과하여 주장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D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원고에게 162,550,1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관련 사건의 인낙조서에 따라 인정된 채무)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를 초과하여 D에게 347,550,101원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갑 제6,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3, 6, 8, 11, 12,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사정들만으로 앞서 인정된 피보전채권을 초과하여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양수수료에 관한 것인데, D는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갑 제12호증 합의서를 통해 2015. 4. 13. D가 원고의 위 분양수수료 채권을 모두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은 분양수수료 지급방법에 관한 내용이고 D의 이름도 'G'란에 기재되어 있어 이를 D 개인의 책임을 부담하는 취지의 합의서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D의 이름은 당시 G의 대표로서 기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관련 사건에서 청구한 금액을 인정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이를 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채권 전부에 대해서까지 D가 그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 주장과 같이 I에게 일부 채권을 양도하였다가 이후 채권양도를 철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원고 주장의 D에 대한 분양수수료 채권이 곧바로 존재하거나 회복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 주장의 I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서(갑 제6호증 제4면)를 살펴보더라도, 양도양수할 채권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E로부터 지급받을 분양대행용역 수수료 또는 원고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원청회사인 G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중 합계 185,000,000원의 채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이 양도되었다가 그 양도가 철회되었다는 채권이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한편 원고가 위 채권양도철회의 통지를 하여 D에게 그 통지가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피보전채권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 D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에 매각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직전 원고와 D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합의의 내용과 그에 따라 원고가 D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준 점, 특히 이 사건 합의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D가 이 사건 호텔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신설법인에 이전하는 외에는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는데, 피고 B은 D가 아닌 며느리인 M이 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로서 D가 신설한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것임에도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에 매각하여 위 합의를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D가 피고 B과 통모하여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기 위하여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2) 피고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내용대로 이 사건 토지를 D가 신설한 피고 B로 이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가 당시 채권자를 해할 사해의사를 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E 등 분양대행계약 당사자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와 G을 상대로 용역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7. 11. 30. D, G 등과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은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신설법인의 설립과 객실이전 등을 약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합의 당사자들은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서 'D는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행사업을 수행할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신설법인은 D와 연대하여 2018. 5. 30.까지 원고의 가압류 청구금액 157,611,372원에 준하는 분양형 호텔 객실 1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마쳐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위 이 사건 합의 내용에서 이미 신설법인의 설립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설법인으로의 소유권 이전은 예정되어 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직후인 2017. 12. 18. D 측에 의해 설립되었고, 그 상호도 관련 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호텔의 명칭(L호텔)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업목적도 관광호텔운영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분양 및 임대업 등 호텔 신축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합의 제3항에서 정한 D가 이 사건 호텔 사업을 위하여 신설한 법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 따른 신설법인은 D가 대표이사인 법인만을 의미하는데, 피고 B의 대표이사는 D의 며느리인 M이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신설법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에서 신설법인의 대표이사를 반드시 D로 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문구가 없고, 달리 그와 같이 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D의 며느리인 M이 피고 B의 대표라는 점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B이 설립된 다음날인 2017. 12. 19. 체결되었고, 그 다음날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러한 D와 신설법인인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피고 B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의 예정을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원고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구하는 D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합의 직후인 2017. 12. 19. 체결되었다. 반면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를 다시 피고 C에게 매매한 시점은 2019. 3. 18.로 이 사건 매매계약 시점으로부터 1년 3개월 상당 이후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바, 이는 별도의 원인에 따른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전체를 일련의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만일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이행을 구하면 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들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3개월 상당 이후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 C에게 매각함으로써 그 이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사해행위로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이 사건 합의의 체결경위와 전후 사정, 합의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이행, 이행시기의 근접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의 설립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그에 따른 피고 B로의 소유권 이전은 원고, D, G 등 당사자들이 합의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이행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와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피고 B은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해 D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를 다시 피고 C에게 매각한 행위가 합의 당사자의 채무불이행 등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D가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서 예정한 대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별도의 사해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D 측이 종전까지 진행하던 호텔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해 원고도 수용하는 의사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한편 원고의 고소로 D의 남편인 K(D와 E의 2014. 12. 10.자 이 사건 호텔사업에 관한 분양대행계약과 이후 위 계약당사자를 D에서 G로 변경합의할 당시 모두 D를 대리하였고, 이 사건

합의에서도 D와 G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으로 이 사건 호텔사업에 관련된 사람으로 보인다)가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D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면탈 등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사해행위로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인섭

판사나혜선

판사김준철

별지

1) 이후 2019. 8. 13. 분할로 16㎡가 줄어들어 그 면적이 3,102㎡로 되었다.

2) 갑 제2호증의 1 분양대행계약서 중 2005. 3. 9.자 계약서(제5면)에서 '(주)H'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H은 등기시스템상 존재하지 않는 법인으로 보이고, 아래 라항에서와 같이 이후 분양대행계약 수수료 청구소송의 상대방이 주식회사 G(2015. 2. 27.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 D)이었고, 관련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14(갑 제5호증 인낙조서의 청구원인 제5면)에서도 주식회사 G이 분양대행계약의 당사자로 변경되었다는 청구원인 주장에 따른 광고대행비 지급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2014. 12. 10.자 분양대행계약의 당사자로 변경된 법인은 주식회사 H이 아니라 G로 봄이 타당하다.